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8년 10월 29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김정일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 비용에 대한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단지 내 수목 식재를 확산하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자연이 숨 쉬는 맑은 마포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1)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 타목)
 - 수목 식재 구비 지원 비율 : 60%
 - 자치구 부담률 : 공동주택 부담률 = 60:40
- 2)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오류부분 정비(안 별표1)

3. 검토의견(신준호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 비용에 대한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단지 내 고사된 수목을 정리하고 식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검토의견은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음.
- 지원대상 범위에 수목식재를 포함하려는 것은 ‘공기청정숲 조성 4개년 계획’에 따라 민간분야 공기청정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건물에 수목의 다층 식재로 녹지량을 확충하려고 추진하는 것임.
- 수목식재 지원은 유희부지 및 법정 의무조경 범위 외 대상지를 발굴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 보이나, 공동주택의 공개공지 추가 확보 및 담장허물기 등의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지원은 녹지량과 녹시율을 높이기 보다는 기존 식재된 수목의 유지관리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 수목식재 지원에 대한 사례는 없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선제적 인식전환 차원의 행정지원으로서 주민이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 조세공평주의에 근거,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시민들이 동일한 행정지원을 받도록

하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어 보임.

- 따라서, 행정지원의 공공성 확보 차원의 방법을 계획하여 공익과 관계되는 부분에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 및 시설물 관리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목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단지 개방화를 조건화하며, 공익 성격이 강한 도로에 한정하여 가로수 식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실천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